Ⅳ. Q&A

Q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지원받는 공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제가 초청하는 단체의 공연료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A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축제의 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인 것은 공연단 세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연단의 초청 자금이 해당 공연단 거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나오는 경우 면세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세하는 국가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공연단을 초청하여 무료 야외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 공연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될까요?

A 무료 야외 공연이라고 해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연단의 공연료 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면세가 결정되며 이 면세규정도 국가마다 다르므로 국가별 조세 조약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Q 네덜란드 무용단을 초청했습니다. 항공비와 숙박료만 지급했고 공연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단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비와 숙박료를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세법에서는 항공비와 숙박료를 항공사나 숙박지에 직접 지급한 경우는 면세하고 있지만 공연단에게 지급한 경우는 공연단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Q 호주 서커스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호주 대사관의 지원으로 항공비, 숙박료, 공연료를 대사관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호주-한국 간 조세 조약에 따르면 해당 공연단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 법정기구의 공공기금으로 해당 공연단의 초청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면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사관의 자금은 정부 자금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면세입니다.

Q 폴란드 연극단체를 초청했습니다. 공연료를 지급했지만 공연단체가 비영리기관이라면 면세가 된다고 알고 있어 단체로부터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A 폴란드-한국 간 조세 조약에 따르면 초청 공연단이 비영리 기관 혹은 단체인 경우 해당 공연단체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연단체의 고정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면세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벨기에의 공연 단체를 초청하였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료는 항공사와 숙박지에 직접 지급하였고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의 성격상 공연료는 지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연단 측에서는 공연료 대신 소속 예술가들에게 일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비의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공연단에게 일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연단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Q 영국의 연극 단체를 공연에 초청했습니다. 초청비는 전액 영국 문화원의 "Think UK"의 일환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경우 면세인가요?

A 면세입니다. 영국-한국 간 조세 조약에 따르면 "양국 정부 간 합의된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hink UK"는 정부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초청비가 지급된 경우 면세입니다.

Q 영국의 비영리 공연단체를 축제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료를 지급했지만 비영리 기관의 경우 면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인가요?

A 아닙니다. 과세 적용됩니다. 영국-한국 간 조세 조약에 따르면 "양국간 합의된 문화교류 협정에 의한" 공연만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에게 공연료가 지급된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노르웨이 공연단을 초청했습니다. 2009년도 수교기념 사업의 일환이었으며 노르웨이 정부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세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노르웨이나 한국 어느 쪽에서든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러시아의 연극단을 초청했습니다. 공연료는 지급하지 않았고 숙박비와 항공료를 공연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숙박비와 항공료를 공연단에게 지급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셔야 합니다.

Q 러시아 무용단을 초청했습니다. 러시아 지방행정기관 소속의 단체였는데 공연단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공연단에게 공연료를 지급하셨다면 과세 적용됩니다. 러시아-한국 조세조약에 따르면 "양국간 합의된 문화교류 협정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에만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질문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공연료가 러시아-한국 정부간 수교 기념, 특별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된 것이라면 면세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국내에 있는 몇몇 기관이 함께 프랑스의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각 기관에서 3회 진행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별도로 각각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각 해당 기관에서 공연료, 숙박비, 항공료 지불 형태에 따라 면세, 과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공연단체의 항공료와 공연료를 프랑스 문화원에서 지급받았고 공동 초청한 기관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숙박하는 비용만을 부담하기로 하고 각 기관이 숙박지에 직접 지급한 경우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 정책에 따라 세금 납부 문제를 별도로 규정하는 곳이 있으니 본 기관의 정책을 참고하시어 세금 납부 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공연에 필요한 소품 구입을 위해 공연단에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A 원칙적으로 공연단에 현금이 지불된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공연단이 기획자 본인처럼 소품을 구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연 경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획자 본인이 쓰고 직접 회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계약 시 공연단 공연료에 소품 구입비용을 추가시켜 계약하시거나 극장 제공사항을 명시하고 이외의 물품은 공연단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문화도시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 비영리행사인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콘셉트를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의 직원을 예술감독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동 예술감독이 한 · 호주 조세조약 제17조의 "예능인"에 해당하나요?

A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콘셉트를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한 · 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 · 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 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V. 부록

1. 조약의 유형과 명칭
2. 문화협정 및 문화공동위
3. 외국인의 한국 사증발급
4. 비거주자 관련법

1. 조약의 유형과 명칭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조약은 체결주체 및 내용 등에 따라 여러 유형과 명칭으로 구분된다.

조약(Treaty)

조약(Treaty)은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주로 당사국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이며, 이 형태의 조약으로는 평화, 동맹, 중립, 우호, 방위, 영토조약 등이 있으며 대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한다.

- 한 · 미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3)
- 한 · 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Basic Relations, 1965)

헌장(Charter, Constitution), 규정(Statute) 또는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Constitution), 규정(Statute) 또는 규약(Covenant)은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된다.

-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 1945)
- 국제원자력기구 규정(Statute of the IAEA, 1956)
- 국제연맹 규약(Con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1919)

협정(Agreement)

협정(Agreement)은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된다. 체결주체는 주로 정부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자조약 형태로서 그 예로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문화협정(Cultural Agreement) 등이 있다.

협약(Convention)

협약(Convention)은 양자조약의 경우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많이 사용되며, 특정분야를 정의하고 상술하는데 사용된다.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이며,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흔히 사용된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의정서(Protocol)

의정서(Protocol)라는 명칭은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많이 사용된다.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1987)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전통적인 조약이 동일서면에 체약국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체결하는데 비하여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은 일국의 대표가 그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 각서(Proposing Note)를 타방국가의 대표에 전달하면, 타방국가의 대표는 그 회답각서(Reply Note)에 전달받은 각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시키는 형태이다. 주로 기술적 성격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조약체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한 행정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사증협정 또는 차관공여협정 등에 많이 사용한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및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데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 · 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에도 많이 사용된다. 상기 이외에도 약정(Arrang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잠정약정(Provisional Agreement, Modus Vivendi), 의정서(Act), 최종의정서(Final Act), 일반의정서(General Act) 등의 각종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동 형태 또는 용어의 사용은 국제관행상의 차이로서 이들은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상 조약법 협약의 양국 간 합의를 구성하는 넓은 범주의 조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약으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기관간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

기관간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은 국가 또는 정부 간에 체결되는 조약 또는 협정이 아닌 정부기관 간에 체결되는 약정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정부 간에 체결된 모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와 모조약의 근거 없이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2. 문화협정 및 문화공동위

(1) 문화협정

1) 개요

문화협정은 통상 2개 국가간 문화관계 전반에 대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양국간 문화협정이 체결 · 발효된 이후 일반적으로 문화교류계획서(Cultural Exchange Programme)를 체결하여 2-3년 단위로 향후 문화교류 ·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문화교류를 시행한다.

문화협정은 ① 교육 · 학술 분야 협력, ② 문화 · 예술 교류, ③ 체육 · 청소년 교류, ④ 매스미디어간 협력, ⑤ 과학 · 기술분야 협력 (상대국에 따라 예외적으로 포함)으로 구성된다.

2) 체결현황

우리나라와 문화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2008년 10월 기준으로 총 97개국이다.

(서명국 : 97개국, 발효국 : 91개국, 미발효국 5개국)

아주 (서명국 : 18 발효국 : 18)		
국 명	서 명	발 효
일 본	65.06.22	65.12.18
말레이시아	65.09.30	65.12.31
호 주	71.05.11	72.07.09
필리핀	70.08.08	73.04.27
인 도	74.08.12	74.08.12
스리랑카	78.01.20	78.12.11
방글라데시	79.06.14	79.06.14
몰디브	84.10.31	85.08.15
파키스탄	85.05.09	86.08.27
몽 골	91.03.25	91.04.30
중 국	94.03.28	94.04.27
베트남	94.08.30	94.09.29
싱가포르	95.08.16	95.09.16
인도네시아	00.11.26	07.09.28
태 국	04.08.25	04.08.25
네 팔	05.03.30	05.04.29
캄보디아(구협정)	06.07.31(73.1.29)	06.08.24(73.1.29)
홍콩(양해각서)	04.08.24	04.11.7
※ 대만(폐기)	65.05.15	66.10.17
미주 (서명국 : 23 발효국 : 23)		
국 명	서 명	발 효
브라질	66.02.27	67.10.20
니카라과	68.04.30	69.02.20
멕시코	66.04.29	69.03.17
도미니카공화국	68.04.09	69.11.21
아르헨티나	04.11.15	07.11.22
(구협정)	(68.08.08)	(70.01.04)
엘살바도르	70.06.26	70.11.01
코스타리카	66.07.29	71.07.04
볼리비아	71.09.07	72.01.19
온두라스	70.12.15	74.04.01
우루과이	71.05.14	74.09.13
파 나 마	74.06.03	75.01.17
파라과이	73.06.28	75.07.31

미주 (서명국 : 23 발효국 : 23)		
국 명	서 명	발 효
콜롬비아	67.07.27	76.07.14
과테말라	78.05.11	78.09.18
수리남	78.11.18	81.02.05
바베이도스	81.09.18	82.02.02
자메이카	81.10.10	82.02.02
칠 레	83.12.07	84.09.21
에쿠아도르	85.05.14	86.06.18
페 루	83.12.06	88.09.14
캐나다 (양해각서)	90.09.19	90.09.19
아이티	84.07.26	85.03.13
베네수엘라	94.11.17	95.03.10
구주 (서명국 : 27 발효국 : 22)		
국 명	서 명	발 효
프랑스	65.12.28	68.05.08
이탈리아	05.10.21	미발효(상대)
(구협정)	(65.3.9)	(70.6.16)
그리스	67.02.28	70.07.03
독 일	70.05.16	72.08.16
터 키	72.08.04	74.05.03
영 국	82.04.21	82.08.11
벨기에	80.03.21	82.10.19
헝가리	89.02.01	89.03.29
포르투갈	90.11.21	91.06.19
루마니아	91.10.28	92.06.01
러시아	92.11.19	92.12.19
폴란드	93.06.09	94.10.03
핀란드	93.10.21	94.01.26
스페인(구협정)	94.01.17(77.2.7)	94.04.28(77.6.6)
불가리아	94.01.17	94.04.06
우즈베키스탄	94.06.06	94.10.10
체 코	94.10.06	94.10.24
카자흐스탄	95.05.16	95.06.15
슬로베니아	95.07.05	97.06.14
키르기즈스탄	97.06.04	97.06.04
에스토니아	01.06.25	01.07.20
우크라이나	04.06.07	미발효(상대)
아제르바이잔	06.05.11	미발효(상대)
세르비아	06.05.16	미발효(양측)
몬테네그로	06.5.16	미발효(양측)
슬로바키아	07.10.30	07.11.27
벨로루시	07.11.05	07.11.05
아프리카 (서명국 : 12 발효국 : 11)		
국 명	서 명	발 효
시에라리온	77.12.22	79.02.24
세네갈	80.04.24	80.08.04
케 냐	80.11.06	80.11.21
코트디브아르	80.02.28	80.12.10
라이베리아	81.02.06	81.05.07
자이르	81.11.20	82.08.11
가 나	87.05.22	87.05.22
모리셔스	87.08.03	91.04.08
가 봉	75.07.07	80.11.18
이디오피아	98.10.26	98.10.26
탄자니아	98.12.18	06.03.19
리비아	99.09.06	미발효(상대)
중동 (서명국 : 17 발효국 : 17)		
국 명	서 명	발 효
튀니지	69.07.18	70.05.14
이 란	74.07.16	75.03.20
사우디아라비아	75.04.19	75.08.04
아프가니스탄	76.11.22	76.11.22
모로코	77.09.10	79.07.20
요르단	77.10.26	78.01.28
수 단	77.11.22	79.10.14
쿠웨이트	82.10.27	83.02.06
모리타니아	83.09.17	89.06.10
이라크	85.09.02	86.03.18
바레인	87.01.28	87.03.18
카타르	87.07.12	88.06.01
이집트	88.08.30	89.06.13
오 만	94.02.02	95.07.01
알제리	97.04.03	97.04.10
이스라엘	94.12.16	95.07.18
아랍에미리트	07.5.22	08.2.26

※ 참고 : 이탈리아의 경우, 구협정은 발효상태이고 신협정은 미발효상태로, 서명국 숫자에는 포함시키고 발효국/미발효국 숫자에는 불포함시킴

(2) 문화공동위원회

1) 개요

문화협정이 체결 · 발효된 이후 문화협정상의 규정이나 양국 간의 별도합의에 따라 문화외교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간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3년마다 양국이 교대로 문화공동위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문화교류 ·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통상적으로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 시행하게 된다.

2) 현 문화공동위 운영국가

현재 우리나라와 문화공동위를 운영하는 국가는 2007년 9월 기준 총 31개국이다.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러시아, 스페인, 핀란드, 루마니아, 벨기에,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3) 문화외교자문위원회

⦿ 설립목적 : 문화교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와 주요 외교행사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설립(2008.6)

⦿ 기　　능 : 문화외교정책과 수행방향에 대한 자문, 해외공연행사에 대한 자문, 미술, 재외공관문화전시장화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3. 외국인의 한국 사증발급

(1) 사증 발급 및 절차

1) 사증 발급

무사증 허가 대상 국가(아래 II-3항 참조)나 해당 개인이 아닌 경우,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 즉 비자(VISA)를 발급 받아야 한다.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한국에서 공연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단체의 소속 개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증이 다르다.

※ 주의하세요!
사증은 단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개인 여권에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자 발급 지원을 위한 서류(초청장, 공문 등)를 만들거나 수령하는 경우 투어에 참가하는 개인의 이름이나 여권 번호 기재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여권에 기재된 같은 표기 (영문 철자, 띄어쓰기 등)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증의 종류에는 단수 사증과 복수 사증이 있다. 단수 사증은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복수 사증은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지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2) 사증 발급 기본 서류

⦿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
-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발급 받을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짐), 수수료

⦿ 사증발급 신청 시 수수료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상당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금액
- 모든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금액
- 중국인 단체 관광객 : 1인당 미화 10달러 상당금액

※ 주의하세요!
사증발급의 주체는 공연자 개인입니다. (단체로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임). 단체로 입국하더라도 단체의 구성원인 공연자/스탭 중 사증 신청기간에 있는 개인은 입국할 수 없습니다. 사증발급 신청일 혹은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사증 발급 장소 및 절차

⊙ 사증 발급 장소 : 해당 국가 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사증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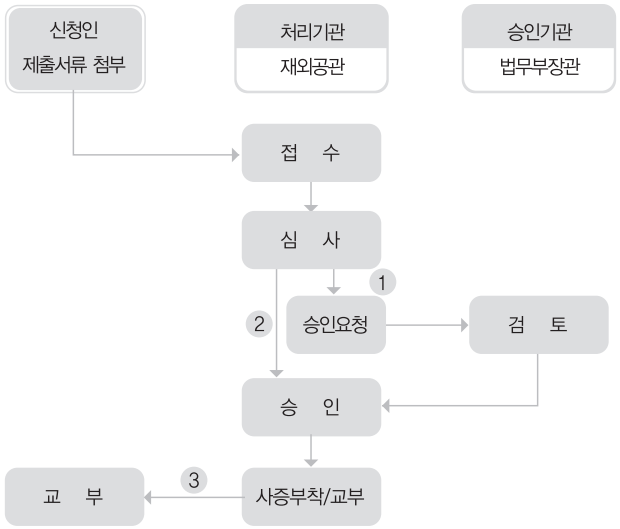

⊙ 처리 기간: 해당 대사관 및 영사관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문의

4) 사증 발급 종류 및 필요 서류

⊙ 영리/비영리, 90일 기준에 따른 발급 사증 종류

사증발급 종류	영리 / 비영리	90일 기준
단기종합 (C-3)	비영리	90일 이내
단기취업 (C-4)	영리	90일 이내
문화예술 (D-1)	비영리	90일 이상
예술흥행 (E-6)	영리	90일 이상
관광취업 (H-1)	영리	-

⊙ 사증 종류 및 제출서류 세부사항

- 공동제출서류 :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컬러증명사진, 수수료

사증발급 종류	요건	공동제출서류외 필요서류
단기종합 (C-3)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 의식 참석, 학술자료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입국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관련 소개자료 -개최 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단기취업 (C-4)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자)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 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흥행(E-6)에 해당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자(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등을 하는 자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 강의활동을 하는 자(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종합(C-3)에 해당됨. 단, 교수(E-1)자격 해당자 제외	- 고용계약서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아래 참조)
문화예술 (D-1)	• 수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을 하는 자 - 논문 작성, 창작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 ·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경우에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 인정서 (혹은 인정번호)만 제출 (아래 참조)

사증발급 종류	요건	공동제출서류외 필요서류
예술흥행 (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자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등을 하는 자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1) 공연법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 - 공연계획서 - 신원보증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혹은 인정번호) 제출 (아래 참조)
관광취업 (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18세 이상 25세 이하인자 (단,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30세까지 허용하며, 기타 국가는 양국 정부의 결정으로 30세까지 연장 가능) - 일정기간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 부양아동(캐나다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사증발급 신청 시 • 협정 체결 국가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 체류기간 1년	- 왕복항공권 -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 서류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5) 사증 발급 인정서의 신청

발급 비자 종류에 따라 피초청인의 사증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초청자가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피초청인에게 송부할 수 있다.

문화예술(D-1) 혹은 예술흥행(E-6)의 경우처럼 장기 체류 (90일 이상)의 경우에는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이 가능하다.

⊙ 신 청 인 : 본인 또는 초청인

⊙ 신청장소 :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제출서류 : 초청장,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컬러사진 2매 (사진 규정은 따라야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사증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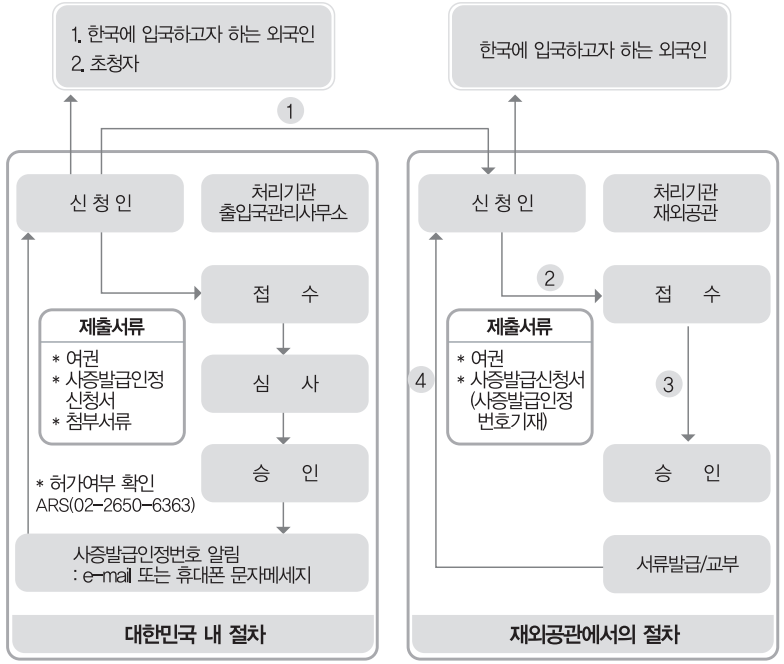

6)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서 발급

공연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려고 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일반 공연(클래식음악회, 연극, 무용 등)과 관광업소공연(연주가요, 곡예마술 등)에 따라 별도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일반 공연의 경우)

- 신청서
- 공연프로그램
- 공연계약서
- 공연단프로필

- 외국인명단 4부
- 공연사진(전단)
- 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관계약서 등)

※ 관광업소의 경우 여권 복사본, 업소와의 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등록증, 공연단이 가수인 경우 비디오 자료를 제출해야함

※ 서류 작성 요령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 주의하세요!
- 추천서를 받은 후에라도 공연일시, 장소, 인원, 프로그램 등의 변동 시 반드시 변경추천을 받아야 한다.
- 변경신청의 경우, 인원 변경 시, 장소변경 시, 기간연장 시에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타사유의 경우 공연추천부 변경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 제출한다.

⊙ 처리기한 : 신규추천 10일 / 변경추천 5일

⊙ 공연추천소위원회 회의 개최일 : 매주 2회 (화, 목요일)

⊙ 서류 접수 일시 및 결과 통보일자 : 업무시간 내 수시 가능 / 심의일 익일 오후부터 민원서비스센터에서 수령

⊙ 수수료 : 건당 20,000(일반공연) / 건당33,000(관광업소 공연)

(2) 무사증 허가대상 국가

1)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아래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B-2)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단, 영리행위나 취업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 아래표를 참조할시 적용 대상 여권 유의. 공연자는 대부분 일반 여권 소지자 이므로 적용 대상 여권의 "일반" 항목을 참조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간	선원수첩
ALGERIA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
ANTIGUA-BARBUDA	안티구아바부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AUSTRIA	오스트리아	일반, 외교, 관용	일반:3개월, 외교 · 관용:18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ARGENTINA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
BAHAMAS	바하마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BANGLADESH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3개월	×
BARBADOS	바베이도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BELARUS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
BELGIUM	벨기에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BELIZE	벨리즈	외교, 관용	90일	×
BENIN	베넹	외교, 관용	3개월	×
BRAZIL	브라질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 · 관용: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BULGARIA	불가리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CAMBODIA	캄보디아	외교, 관용	60일	
CHILE	칠레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OLOMBIA	콜롬비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COSTARICA	코스타리카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CROATIA	크로아티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YPRUS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
CZECH	체코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DENMARK	덴마크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COMMONWEALTH OF DOMINICA	도미니카연방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DOMINICA REP	도미니카공화국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ECUADOR	에쿠아도르	외교, 관용	관용:3개월, 외교:무제한	×
EGYPT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EL SALVADOR	엘살바도르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ESTONIA	에스토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FRANCE	프랑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FINLAND	핀란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GERMANY	독일	일반, 외교, 관용	일반:3개월, 외교 · 관용:무제한,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GREECE	그리스	일반, 외교, 관용	일반:3개월, 외교, 관용:무제한	×
GRENADA	그레나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GUATEMALA	과테말라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HAITI	아이티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HUNGARY	헝가리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ICELAND	아이슬랜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INDIA	인도	외교, 관용	90일	×
IRAN	이란	외교, 관용	3개월	×
IRELAND	아일랜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간	선원수첩
ISRAEL	이스라엘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ITALY	이탈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JAMAICA	자메이카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JAPAN	일본	일반, 외교, 관용	일반:B-2 90일, 외교 · 관용: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LATVIA	라트비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LESOTHO	레소토	일반, 외교, 관용	60일	×
LIBERIA	라이베리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LITHUANIA	리투아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LUXEMBOURG	룩셈부르크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MALAYSIA	말레이시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MALTA	몰타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MEXICO	멕시코	일반, 외교, 관용	일반:3개월, 외교 · 관용:90일	×
MONGOLIA	몽골	외교, 관용	30일	×
MOROCCO	모로코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NETHERLAND	네델란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NEW ZEALAND	뉴질랜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NICARAGUA	니카라구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NORWAY	노르웨이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PAKISTAN	파키스탄	외교, 관용	3개월	×
PANAMA	파나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
PARAGUAY	파라과이	외교, 관용	3개월	×
PERU	페루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PHILIPPINES	필리핀	외교, 관용	무제한	×
POLAND	폴란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PORTUGAL	포르투갈	일반, 외교, 관용	60일	○
RUMANIA(D. O. S.)	루마니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RUSSIA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
SINGAPORE	싱가폴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SLOVAK	슬로바키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SPAIN	스페인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ST. KITIS NEVIS	세인트킷츠네비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ST. LUCIA	세인트루치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ST. VINCENT	세인트빈센트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SURINAM	수리남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SWEDEN	스웨덴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간	선원수첩
SWITZERLAND	스위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THAILAND	태국	일반, 외교, 관용	일반:3개월, 외교 · 관용:무제한	○
TRINIDOD-TOBAGO	트리니다드토바고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TUNISIA	튀니지	일반, 외교, 관용	3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TURKEY	터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UKRAINE	우크라이나	외교	90일	×
UNITED KINGDOM	영국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URUGUAY	우루과이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VENEZUELA	베네주엘라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 · 관용:3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VIETNAM	베트남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2)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국가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사증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다.(2008.11월 현재 49개국)

관광 또는 방문 목적(B-2)에 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단, 캐나다는 6개월, 호주 · 홍콩 · 슬로베니아 · 일본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3) 빈번 출입국자

빈번 출입국의 대상 국가는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이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 위 해당자중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외국인

※ 참고 웹사이트
- 출입국관리사무소 www.immigration.go.kr
- 영상물등급위원회 www.kmrb.or.kr

4. 비거주자 관련법

(1) 비거주자의 개념 및 개인의 소득 납세의무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정의한 것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 · 거소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개인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적용역에 대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다.

저작권료 및 사용료에 관한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과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 · 제2호 ·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 · 제2호 · 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 · 모형 ·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외국법인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다.

저작권료 및 사용료에 관한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명시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 · 제2호 ·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 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 · 제5호 ·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 ·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 거소 · 본점 ·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93조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특수 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6호, 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 · 모형 ·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6) 원천징수에서 항공료 및 숙박비 제외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항공료 및 숙박비를 관련 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법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 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 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비거주자 원천징수 납부 절차 관련법

비거주자 원천징수 납부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5〉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의7〉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 · 제7호 및 제13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의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 · 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 · 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 · 촬영 · 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⑥ 2항 ·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8) 외국법인 원천징수 납부 절차 관련법

외국법인에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98조의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 제2호 · 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연법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여부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공연추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5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 · 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 · 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①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공연개요 · 각본 · 가사 · 악보
2. 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 · 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배역 · 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 · 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국세청,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서울:국세청, 2007
강은경, {계약에서 공연장까지}, 경기:이클라세, 200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 서울: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8 개정판
손경한, {엔터테인먼트법}, 서울:지원사, 2008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국제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www.klaw.go.kr]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http://immigration.go.kr]

집필 · 제작
김소연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김혜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주소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최미경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감수
박혜진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도움주신 곳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인터뷰 및 자료 협조
김형태 ((주)예감 경영전략부장)
김혜영 (국립극장 공연기획단 공연사업팀/해외)
성무량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외협력팀장)
손미정 (예술의전당 문화마케팅팀 과장)
조성원 (사단법인 문화마을 들소리 기획실)
황혜신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기획팀장)

2008년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국제교류 조세제도 해설집 (하)

발 행 일 2008년 12월 31일
발 행 인 이규석
발 행 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0 보생빌딩 2 · 4 · 5층
전화 (02)745-3045 팩스 (02)745-2071
www.gokams.or.kr
디 자 인 현대문화사 (02)2278-4482
인 쇄 현대문화사 (02)2278-4482

※본 책은 상 · 하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책자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